

I. 들어가는 말

언론계의 집단적 이기주의 풍조가 여전히 만연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공개매체의 수와 더불어 사이비의 독버섯이 민주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향한 의욕적인 장정을 유혹하고 민주언론의 생명을 넘보고 있다. 사회발전에 뜻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동안 열정적으로 민주언론을 창달하려고 노력해온 양심적인 언론인의 빛나는 전통에 오욕을 더해가고 있다. 이제 드디어 사이비 언론과 사이비 기자에 대한 응징을 위해 공권력이 발동되고 있고(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2월 설치되어 사이비기자들에 의한 공갈피해를 신고 받아 수사를 개시한 듯 하다), 국민들의 여론도 지난날의 공갈·협박을 일삼던 망둥이 기자들을 연상하며 강력한 법적 규제까지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언론의 대장정을 위한 자유언론의 확보와 공정보도의 실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오늘, 사이비 언론의 출현이 빌미가 되어 언론통제에 길들여진 국민들과 언론통제의 고등술수를 구사할 수 있는 공보 관료들이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속이고 속는 폭압적인 사이비 언론규제 조치가 또한 발동될까 두렵다.

또한 거둬나기를 「거둬」 천명하고 있는 기성언론들이나 언론문화운동을 통해 오늘의 미세한 언론상황 변화나마 얻어낼 수 있었던 민족·민주언론들은 물론, 자본과 권력 또는 영향력을 갖지 못해 사실상의 언론활동을 봉쇄당했던 양심적인 소수자들 모두에게 사이비 언론의 출현은 커다란 경종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언론환경 아래서 옛 제도언론의 모습대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이미 없어 졌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번신은 일각이 다른 형편이며, 민족·민주언론이나 소수양심세력의 언론활동도 이들 사이비 언론에 의해 존립기반을 잠식당해 그 진실성을 호도당하며 그 어려운 발아를 짓부수는 탄응의 구실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비 언론에 관한 한, 공익은 한결같이 그 불묘를 강하게 요청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천방법의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본질에 어떠한 손상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재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사이비 언론이 어떤 기관 내지 조직이며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나아가 사이비 언론활동이 인간커뮤니케이션의 제부문과

개인적 삶의 전반에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는지를 살펴본 후, 사이버 언론을 물리치는 실천 가능한 방법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이버의 의미와 사이버 언론의 출현배경

사이버란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사물이나 현상 또는 사람의 본질, 내면 또는 속성과 모순되는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진실에 대한 대칭으로서 가짜, 허위, 사기꾼들을 통털어 사이버라는 일종의 제한적 의미를 갖는 수식어를 접두사로 사용하게 되면 어의론적으로는 진실과 양립 불가능한 특성의 실물상황을 지칭하는 뜻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사이버언론이란 언론기관의 이름을 내거는 일종의 변태업소요, 언론인으로서의 사이버는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을 배덕행위에 이용하는 위장취업언론인들이라 하겠다.

언론은 인간과 사회를 매개하는 생명활동 그 자체이지만 현대사회의 구조적 심화와 더불어 인간의 인식능력이 선악정사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시장과 같은 언론의 자동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언론이 전파하는 조작된 메시지와 허구들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회집단과 연관 되었을 때, 그 진위의 거증책임이 피해당사자 쪽에 주로 돌려지고 있는 많은 판례들에 비추어, 사이버언론인의 공갈·협박행위는 언론의 자유와는 별도의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제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사이버 언론인이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도덕적 원칙 없이 언론의 본분을 이탈하는 자 모두를 가리킬 수 있겠으나 도덕적 원칙의 규명이 외현적으로 규명되기 어렵고 공리주의 원칙의 도덕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적 동기는 실용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도덕률의 다양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 삼아 논의하려고 하는 파렴치한으로서의 사이버언론인은 좁은 의미로 밖에 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도 사이버 언론인은 건실한 언론기업이나 악덕 악질적 언론기업을 막론하고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언론기업의 수가 증가한 것만이 사이버 언론인을 양산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일반의 주장은 기성언론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논지에서 나왔거나 사이버 언론인이 규제에 임하여 기성언론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언론기관의 수를 줄여보려는 단순하고도 비합리적인 추단이다.

언론기관은 반드시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만이 운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다 민주적인 언론은 국민 각계각층이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그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다 많은 매체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국민들은 보다 폭넓게 매체운영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반대의 이념과 사상을 증폭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 언론질서의 본질이다. 또한 노동조합,

종교단체, 학교, 교원단체 등의 특수세력도 자유롭게 언론기관을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언론활동을 책임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매체설립을 허용해 주는 것이 소수의 언론귀족을 해체 재편시키고 국민 모두가 개성에 맞는 표현기관을 공유(소유의 뜻이 아니라 사용의 뜻에서)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사이비 언론을 언론기관의 양적 증가에 결부시키는 주장들의 독단성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응징하고 처벌하고자 뜻을 모으는 대상으로서의 사이비언론인의 출현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이비 언론인은 크게 나누어

첫째,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폭로 하겠다는 공갈·협박으로 금품을 뜯는 언론인, 둘째,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해당 지를 강매하는 언론인, 셋째, 기자(언론인)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의 이권을 해결해주거나 각종의 로비활동을 대행해 준 다음, 특정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공여 받는 행위를 하는 언론인, 넷째, 자신의 직무에 따라 당연한 언론활동을 했으면서도 자신의 위세, 직업적 속성, 성행 등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하는 언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형의 기자는 부조리하고 부패한 사회환경,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분배구조,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배금풍조, 집단의사 결정과정의 파행적인 권위주의성향을 발판으로 하여 발생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공갈 협박 행동을 불의한 사회현실에 연결시켜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탈법행동을 일삼아, 사이비 언론의 파장을 확대하는 주범이다. 이런 유의 사이비 언론인은 이들을 고용한 언론기관의 경제기반이 전연 없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소매체에 소속된 자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기관은 기업체로서의 자립능력이 전연 없고, 사주 개인의 경제력도 미미하기 때문에 피고용자로서의 기자들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왜곡되어 있고 윤리의식도 혼조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인식능력과 판단력 및 의식수준이 대체로 낮은 저질인력이 모이게 되고 그나마 무보수 또는 말할 수 없는 박봉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권은 오히려 타인의 약점·비리·실수 등에 대한 공갈과 협박에 의존하는바 크다. 이들에게 언론의 자유란 하나의 취리 도구요, 거짓 명분일 뿐만 아니라 공갈·협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을 하도록 이끌 만큼 위구심과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 부유에 속하는 사이비 언론인이 내세우는 언론의 자유는 공갈과 협박의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데 아무런 고려가 되지 못한다.

둘째 유형의 기자는 강제적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후 사후적으로 재물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해당 지를 강매함으로써 취리하는 자들도 첫째 유형에 비해서 보다 지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묵시적 동의를 유인해낸다. 이 부유에 속하는 기자는 자본능력이 없는 영세 언론매체를 위해 기사를 판매하거나 광고를 할당하여 강제수금을 하는

영업사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기사의 취급이나 광고의 거절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요구할 때는 문제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사이버 언론을 척결하겠다는 시민정신을 가지고 대가의 지불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매체형 사이버 언론은 졸부나 과대망상형 정치지망생의 선전·홍보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버 언론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선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으며, 기성언론의 높은 벽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소수의 이용자 때문에 이에 맞을 들인 사이버 언론이 여간 해서 없어지지 않고 공중에게는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언론공해가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유형의 사이버를 몰아내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매체에의 노출을 금지하고, 당사자의 승낙 없이 특정개인에 대한 홍보를 금지·처벌케 하는 법규를 제정하거나 광고에 관한 법규 중에도 강제광고를 규제하는-적어도 대전청구를 무효화시키는-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현행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의 법적 효과를 제고하고 개인이 사이버 언론에 의해 물질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셋째 유형의 사이버 기자는 언론사업체의 재무능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각종 언론기관의 관행 또는 언론인의 직업윤리 타락으로 인해 흔히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치인과의 흥정을 대신하는 일들은 언론기관 자체가 출입처 언론인에게 흔히 부담하게 하는 일이지만 출입처마다 정보유통을 독점하는 기자단을 설치하고 관급기사 또는 홍보용 기사를 재 전달(release)하는 반대급부로 특혜를 받는 일, 자신의 취재분야와 관련된 부업을 통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은 언론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부수입의 형태로 기자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언론인의 직업적·개인적 금지에 비추어 볼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수한 언론기관의 언론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언론기업의 더욱 무능한 언론인들도 덩달아 이러한 반윤리적 사이버 언론활동을 즐겨 배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세 번째 유형의 언론인 발생의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소위 언론귀족들의 출현 자체가 사이버 언론의 출현을 계몽하고 있다는 역설을 성립시키고도 남는다.

넷째 유형의 사이버 언론인은 언론전문직으로서의 공인의식 부족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있는 관료권위주의적 부당한 힘을 행사함으로써 생긴다. 언론인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언론질서가 그 동안 소수의 정치군부와 이에 협력하는 지식인 및 지식인의 일군을 이루는 언론인들의 제후로 인하여 크게 상처를 입었고 권·언 복합체 내지 권·언·자 복합체로의 이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발맞추어 언론인이 사이버 권력을 뒤흔들어 볼 수 있었고, 권력과 언론의 밀월을 통해 국민흥론을 조종하고,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능동적 동의를 얻어왔기 때문에 언론인은 자신의

통상적이고 당연한 업무를 통해서도 촌지와 뇌물을 수수할 수 있었다. 정보원과의 관계에서 기자들이 받는 선물, 특혜, 공짜여행, 상품의 할인혜택은 우리의 언론문화 속에서 거절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원 측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언론경영진을 통한 우회적인 압력과 회유를 받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패된 언론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전통들이 최근 언론기관의 양적 증가와 관련하여 폭넓게 확산된 것도 사이버 언론의 패륜과 부도덕을 전에 없이 두드러지게 한 꼴이 된다.

Ⅲ. 사이버 언론과 언론윤리의 문제

사이버 언론이 난무하는 것은 자유언론의 개화를 막고 언론민주화를 지연시키는 일종의 언론병충이다. 사이버 언론은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유형으로 언론계 내 외부에서 자라나 마침내는 언론을 궤멸시키게 될 언론의 암이요 공적이다. 사이버 기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회의 기강이 조금만 흐려졌다 싶으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의 공동선을 뒤흔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맡고 있는 의견과 정보의 공정하고 정직한 전달을 왜곡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 높은 위치를 승인 받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먹칠하고 언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언론을 탄압하려고 생각하는 당국자들에게 정화라는 명분을 주어 언론계에 대한 타율적 강제에 의한 통제를 불러들일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언론이 언론계 전반에 미치는 광범한 도덕적 폐해들이다. 이러한 도덕적 폐해 역시 윤리감정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개적 언론행위 참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언론계의 누적된 폐해의 일단이 시류에 편승하여 빚어내는 하나의 돌출물이다. 기성언론들은 대체로 객관보도의 명목론에 빠져 심층적 탐색보도를 회피하면서 사회의 본질적 갈등을 외면하기 일쑤이고 해설이나 칼럼들도 논리의 전개에 의한 사태의 본질 규명보다는 가십(Gossip)위주로 저질화 되어 특정조직이나 인물에 대한 약점 찾기와 그에 따른 수식어 장난이 지나쳤으며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도의 추상어가 독자들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고 오해를 재생산해 냈었다. 또한 언론인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자기수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정보원의 홍보성 기사를 공정하게 재구성하여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결과, 정보원 측에 자신의 보도활동을 종속시키거나 지나치게 밀착함으로써 출입처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었던 점도 사이버 언론풍토를 유지해온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도덕적 피해의 원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실언론기업들이다. 도덕은 무릇 최소한의배가 불려야 가능한 것이다. 최소한의 유지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자들을 취재현장에 내모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는 일종의 「공갈단」이요, 기자들 역시 사이버로 남을 수밖에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갈단형 언론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철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도덕적·법적 의무감정이 높아져야 할 것이지,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나아가 언론인들도 그간 관료권위주의정권의 하수인으로써 여론을 조작하는 선전기능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에 대해 또는 정보원과의 통상적인 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적 존엄과 사회적 위신을 손상시키면서 자신의 직업적 목표만을 관철시킨 적은 없었는지 자성해 볼 일이다. 특히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도 전에 정보원과의 물질적 거래를 기초로 하여 단정적인 표현으로 진실을 호도한 적은 없는지 또한 고도로 지능적인 정보원과의 협조를 통해 다수의 피해대중들보다 소수의 억압세력쪽의 이익을 나누어 가진 적은 없는지도 살펴 볼 일이다. 또한 신문경영자의 경제력과 저명성을 이용하여 언론인과 언론기관이 여타의 수익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분할해 착복한 적은 없는지 언론인이나 언론기업 스스로는 다시 한번 자기주변을 둘러 볼 일이다.

언론기관이 자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뉴스를 보도하거나 해설을 한다면 기업소유자의 사보(house organ)일 뿐이지 공식적인 언론매체는 아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건의 보도 예컨대 언론기관이 대기업에 소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룹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며, 자사 또는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나 개개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기준에서 공평무사한 보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칼럼이나 근로자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보도, 소기업의 중요한 동정이 대기업의 사소한 일상 업무에 밀려 보도에서 제외되는 일, 소규모 언론문화운동 단체를 비롯한 각종 소수파의 긴박하고도 중대한 활동들이 기사화되지 못하는 일 등이 있는 한, 사이버 언론의 온상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IV. 사이버 언론퇴치의 방법

우리는 이제까지 사이버 언론의 출현과 그 도덕적 오염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이버 언론의 퇴치 또는 최소화가 불가피하다 는 이해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그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보면,

첫째 언론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보도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주지하고 공감하는 일이다. 언론은 공정보도를 담보로 해서만

자유언론을 실천할 책임이 있고 국민들은 자유언론을 담보 삼아 공정보도를 실천해 주도록 언론기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수탁 받은 자유언론의 조건들을 공정보도를 통해 확보해 가려면 공익의 입장에 서서 사회윤리의 일반원칙들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숭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즉 개개의 언론매체들은 자기의 가치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언론인의 자율영역을 확대시켜가면서 조직의 자립기반을 다져가는 가운데 사적 이윤보다는 더 큰 공동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언론의 양적 증가에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다는 신화에 현혹되는 일이 없이 더 많은 언론활동을 고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동안의 언론활동은 국가위기상황의 조성 그와 다른 국민여론의 계도, 대중매체에의 접근통로가 경색된 데서 비롯된 비민주적 폐쇄성 및 지배연립 측의 언론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에 국가체제의 구성분모로 기여해 온 바 크다. 따라서 그와 같은 언론기관들은 동일한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조망의 지평도 동일하고 언론인의 논조 역시 대동소리하게 지배연립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이러한 관습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가 자기자신의 혁신만으로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동안 활성화가 지연되었던 부문 특히 대항언론세력의 표면화를 비롯하여 권위적 언론기구에 의해 억압되고 있었던 많은 민중부문의 언론욕구들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권장하는게 순리다.

특히 전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건전한 비평과 토론의 언론부문이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논리적 사고의 단계적 발전이 권위와 언어폭력에 의하여 짓눌렸던 과거를 반성할 때, 언론 그 자체에 대한 비평, 비판과 반론의 공간 확대는 사이비 언론행위를 통제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확대된 비평공간에서의 양적 성장은 질적으로 보도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줄 것이다. 즉 사이비 기자가 기사를 썼거나 쓰겠다고 협박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쪽에서도 똑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사이비 언론을 규탄할 수 있을 때 사이비 기자는 발붙일 터를 잃는다. (동남 '1989. 2. 10 자 중앙일보 분수대-사이비 기자) .

셋째 기성의 언론기관들이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정을 계속하게 되면 사이비 기자는 자연도 도태되거나 스스로의 도덕성을 연마하여 거듭 태어나게 된다. 「오욕의 타율보다 언론자정」(1988. 2. 10 동아일보 사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도 더 엄격한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더 엄격한 도덕적 수준의 유지는 더 엄격한 도덕적 규범에 합의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언론기관과 언론인이 힘을 합칠 때에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언론인이 따를 도덕규범은 반드시 사회적 제약 밑에서 그 생성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업생활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언론기관이 언론인의 직업윤리가 되는 도덕규범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줄 때 비로소 도덕원칙으로서의 실천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언론계의 자정은 언론기관과 언론인 각자가 자신들이 준수할 도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자기규제를 할 수 있는 원칙의 수립에 합의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기자윤리강령이나 각 사별 윤리강령을 노사가 합의·결정하게 되면 이 윤리강령은 기업주나 기자 모두에게 도덕적인 행위준칙이 되고 언론기관과 언론인이 통합적인 힘을 발휘하여 사이버 기자의 출현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강령은 설령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비판을 행하고, 동료들로 하여금 그 준수를 고무시켜주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정의 근거가 있어야 언론은 사이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관의 변혁과 그에 따른 위계질서의 재편성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언론은 건전한 도덕적 기준을 갖춘 언론기관과 정의와 공익을 직업적 가치의 준거로 삼는 건전한 언론인에 의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언론민주화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패와 부정이 판치고 차별적 대우와 특혜가 횡행하며 승인된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환경에서는 사이버 언론의 발본색원의 「황하의 물이 푸르러지기를 기다리는」 이상으로 무망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기자들이 개입하여 해결할 이권이 따로 있지 않고 폭로 할 부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가능한 한 공개되고 민주화되면서 각자가 그의 공과, 그 일의 결과, 각자의 필요, 정당화가 가능한 위계질서에 따라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이버 언론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국민의 지탄 속에 자멸하게 되고 사회질서의 파괴행위로서 합법적으로 처단되어 진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덧붙이건대 우리는 사이버 언론이 정보와 의견의 원활한 교류를 가로막는 최대의 잡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위해 민주언론이 더욱 튼튼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잡음의 제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사이버 언론이 삼제된 우리의 언론공간에는 언론과 국민을 하나를 묶는 교호적이고 쌍방적인 언로가 열려 사회와 대중들에게 책임을 지는 민족·민주언론이 무성하게 성장해 갈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우리는 아주 비근한 생활현장의 예이지만 구독사절을 써 붙인 독자에게 무가지인지 유가지인지도 불분명한 신문배포를 일삼고 구독료 지불을 요구하는 저명한 신문매체들의 판매질서부터 고치자는 자그마한 시민운동이라도 벌여 가면서 어떠한 고등수법을 사용하는 사이버언론이라도 싹트고 자라나 모처럼 회복해가는 언론의 소중한 자유를 짓밟게 하는 구실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각산하여 현재의 각종 언론매체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지변들을 모아야 할 것이다.

□ 고려대 불문학과, 서울대 신문대학원. 고려대 대학원 (박사)

□ 저술: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 「매스컴과 현대사회」, 「세계선전선동사」(공저)
외 □ 현재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법제윤리연구회 총무.